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 및 의견 제시 기회 안내

개정 공고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구가 영구 주택을 찾는 동안 친구나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지내게 될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새로운 11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뉴욕시 규정 제 6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재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 NYC DOC)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긴 특정인에게도 제공됩니다. Pathway Home은 더 이상 새로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기존 LINC 6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단, LINC 6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LINC 6 갱신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할 경우 갱신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0분, 맨해튼의 125 Worth Street, 2층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구는 Lafayette Street에 있습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rules.cityofnewyork.us>.
- **이메일.** 서면 의견서를 NYCRules@hra.nyc.gov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에 "Pathway Home"을 포함시키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본인이 Pathway Home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 **팩스.** 해당 의견은 (917) 639-0413번에 전화를 걸어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Pathway Home"을 포함시키십시오.
- **공청회에서의 발언.** 공청회에서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 제시를 원하실 경우, 발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청회 시작 전에 929-221-669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1일 당일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3분간 발언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 시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18년 8월 21일입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 장소에서 외국어 통역사, 수화 통역사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기 주소로 서면으로 알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929-221-6690번으로 전화하여 알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2018년 8월 14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 편의 옵션은 휠체어나 기타 이동 장치입니다. 장애인 편의에 관한 기타 요청사항은 담당자에게 2018년 8월 14일까지 위에 설명된 대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정에 관하여 제시된 의견들은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수일 내에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제출된 모든 의견, 서신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사본은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본 HRA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법령의 603절과 1043절, 뉴욕 사회복지법의 34, 56, 61, 62, 77 및 131-a절은 HRA가 이 제안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HRA의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의 규정은 뉴욕시 자치 단체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의 제68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규정 입안 또는 개정 시,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반드시 뉴욕시 법령의 1043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 사항 역시 뉴욕시 법령의 1043절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근거 및 목적의 진술

뉴욕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중 다수가 CITYFHEPS라는 단일 프로그램에 통합됨에 따라, HRA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가구가 영구 주택을 찾는 동안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일정 주거지에 최대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노숙자 보호소에 최소 90일 간 거주했거나,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CITYFHEPS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함께 최대 1년 동안 거주하려는 "호스트 가족"을 확인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호스트 가족에 낼 월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거주 가구의 크기에 따라 \$1,200 ~ \$1,800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제안된 규정에 따라 뉴욕시 재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긴 특정인들에게도 제공됩니다.

2년 전 설립되어 5년까지 지급 가능한 LINC VI 가족 및 친구 재결합 프로그램은 더 이상 보호소를 나온 가구에 제공되지 않지만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LINC VI가 여러 가구를 보호소로부터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나, Pathway Home의 짧은 기간과 부담스러운 비싼 월 임대료는 더 많은 가족들이 보호소를 떠나 자신들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자료에는 밀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11장을 포함하기 위해 뉴욕시 규정 제68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1-01 정의.

(a) "가구"는 Pathway Home으로부터 지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Pathway Home 임대료를 지급한 개인을 의미한다.

(b) "호스트 가족"은 Pathway Home 지원금이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호스트 가족은 1차 임차인을 포함하며 1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c) "Pathway Home 프로그램"은 본 장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 "프로그램 참여자"는 성인 가구 구성원을 의미한다.

(e) "1차 임차인"은 호스트 가족의 거주지에 대해 또는 그러한 거주지의 소유주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1차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1차 임차인은 반드시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f) "HRA"는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g) "DHS"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를 의미한다.

(h) "뉴욕시 사회 복지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DSS"는 HRA와 DHS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i) "국장"은 DSS 국장 또는 국장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j) "DHS 보호소"는 DHS가 운영하거나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보호소이다.

(k) "DHS 가족 보호소"는 DHS가 운영하거나 또는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아동 또는 성인 가족이 있는 가족을 위한 보호 시설이다.

(l) "DHS 독신 성인 보호소"란 DHS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독신 성인을 위한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m) "공공 지원"(PA)이란 사회복지법 § 349에 의거한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 사회복지법 § 159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규정에 의거한 안전망 지원(Safety Ne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월별 보조금 및 보호소 수당을 포함한 혜택을 의미한다.

(n) "근로 소득"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1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되고 산출된다. 단, 이 절의 (q)항 및 (r)항에서 정의된 JTP 프로그램 및 SYEP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o) "불로 소득"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제387.1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 및 산출된다. 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포함한다. 가구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해당 가구가 수령한 제3자의 기부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p) "총소득"이란 본 절의 (o)와 (p)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소득 공제는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87.12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가구의 총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q) "JTP"는 HRA가 관리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Job Training Program)으로, 시 당국은 PA 수령자에게 유급 고용 체험 및 경력 개발을 제공한다.

(r) "SYEP 프로그램"은 유급 여름 취업 기회가 있는 연령이 14세 ~ 24세 사이인 뉴욕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가 관리하는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 "거리 노숙자"란 (1) 거리 또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며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 (2) 센터 또는 임시 주택 환경의 하락으로 DHS 하청업체로부터 최소 90일 동안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 또는 (3) DHS 하청 아웃리치 제공업체로부터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리에서 거주, 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에 거주하지 않거나, 방문 센터 또는 임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영구 주택에 배정되었으나 현재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 11-02 Pathway Home 프로그램 운영

HRA는 Pathway Home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단, DHS와 협의 하에 본 장의 11-03절에 따라 HRA가 최초 자격 유무를 결정할 경우는 예외이다.

§ 11-03 자격.

(a) Pathway Home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가구가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및

(i) 본 절의 (b)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ii) 본 장의 10-04(c)절에 따른 CITYFHEPS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B) 해당 가구가 거리 노숙자이거나, 또는

(C) 해당 가구에 뉴욕시 재활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긴 DHS 보호소에 과거 상당 기간 체류한 자가 있고 국장이 당사자의 재입소를 피하려면 Pathway Home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PA)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는 HRA가 해당 가구에게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의거하여 모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4) PA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공 지원(PA)을 받아야 한다.

(5) 가구가 현재 DHS 가족 보호소에 있는 경우,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따라 DHS에서 결정한 대로 해당 가구는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을 받아야 한다.

(6) HRA는 해당 가구를 대신하여 Pathway Home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가구는 자신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본 장 11-04조의 표에서 정한 최대 임차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HRA로부터 해당 가구 대신 월 임차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친척 혹은 친구로 구성되는 호스트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

(8) 호스트 가족과 호스트 가족의 주택은 본 장 11-07조 (h)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b) 보호소 체류 및 제한 규정.

(1) 보호소 체류 자격. DHS 가족 보호소 거주자는 승인 전 달력일 기준 최대 10일의 기간을 제외하고 90일 이상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의거 DHS가 결정했거나 또는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452.2조 (g)항 452.9조에 의거 HRA가 결정한 대로 11-03(a)(1)(A)(i)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는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 거주자는 승인 365일 전 당사

자가 적어도 90일 이상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11-03(a)(1)(A)(i)항의 목적을 위해 보호소 체류 자격이 되어야 한다.

(2) 보호소 체류 자격 제한. 국장은 보호소 체류 자격 대상자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국장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한 날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용 자금 유무 등을 평가할 경우 11-03(a)(1)(A)(i)항의 목적을 위해 통보해야 하는 제한 기한일을 정해야 할 수 있다. 국장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및 가용 자금 지원 유무에 대한 추가 검토 시 제한 기한일을 철회할 수 있다.

(c) 신청서는 HRA가 정하는 양식과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d) 승인 시, HRA는 본 장의 11-04절에 따른 가구의 Pathway Home 지급액을 계산한다. 지급은 1년에 대하여 승인을 받게 되고, 본 장의 11-05절 및 11-07(g)절(단, 명시된 경우는 제외) 가구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급 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 11-04 호스트 가족에 대한 Pathway Home 지급액 계산.

(a) 본 절의 (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호스트 가족이 월 임대료를 더 낮게 청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가구가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한 HRA는 호스트 가족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최장 1년 간 지급해야 한다.

<u>Pathway Home 지급액</u>			
<u>가구 규모</u>	<u>1인 또는 2인</u>	<u>3인 또는 4인</u>	<u>5인 이상</u>
<u>호스트에게 제공되는 월 임대료</u>	<u>\$1200</u>	<u>\$1500</u>	<u>\$1800</u>

(b) 1차 임차인이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 Pathway Home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리스 혹은 임차계약 발효일자의 1차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지불하는 임차료와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352.3조에 따라 수령하는 1차 임차인의 보호소 수당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호스트 가족이 임대 안정화 대상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Pathway Home 지급액은 뉴욕시 행정 규정 제9장 2525.7부에 따라 해당 가구의 비례 배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호스트 가족이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Pathway Home 지급액은 임대주가 1차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11-05 이사.

(a) HRA가 대신하여 Pathway Home 임차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HRA의 승인 없이 새 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고 Pathway Home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없으며, 뉴욕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참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이사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HRA는 이사 후에 신청된 승인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가구가 현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HRA는 새 거주지가 본 장의 11-07(h)항에 따라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하였다면 이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사를 하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한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

(b) HRA가 새 거주지로의 이사를 승인하였다면, HRA는 해당될 경우, Pathway Home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다른 이사가 없는 한, 해당 가구가 Pathway Home 자격을 유지하는 남은 기간 동안 부담할 지급액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 11-06 기관 검토 회의 및 DSS 행정 이의 제기 과정.

(a) DSS 행정 검토 요청권

신청인 또는 전직/현직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HRA가 본 하위장의 조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본 하위장에 의거하여 HRA가 내린 결정사항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신청인이 본 절의 (a)항에 따라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면, HRA는 제기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한다.

(2) 신청인은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개인이 차후 DSS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지 6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DSS 행정 심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심리일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 (c)항의 (2)호에 규정된 DSS 행정 심리 요청 기한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c) DSS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전자 수단 또는 팩스, 또는 이의 제기 통지서에 DSS가 명시한 기타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 본 조 (b)항의 (4)호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사항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 권한을 가진 대리인.

(1)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의거하여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를 대표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당사자를 대표하고 해당 케이스 기록을 검토해도 된다는 서면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그러한 서면 승인서는 당사자가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DSS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고지할 경우 위임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DSS가 한 개인 또는 기관이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개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을 고지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DSS가 해당 개인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한다.

(e) 지원금의 지속.

(1) 프로그램 참여자가 Pathway Home 지원금을 감액, 제한, 정지 또는 중단하기로 한 HRA의 결정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본 절의 (l)항에 따라 심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 당시 유효한 Pathway Home 지원금 액수에 해당하는 Pathway Home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A)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본 이의 제기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의 제기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또는 정책, 또는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하위 조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Pathway Home 임대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Pathway Home 임대료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A) 프로그램 참여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B)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불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C) 12개월 분량의 Pathway Home 지급액이 이미 가구 대신 지급된 경우.

(4)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절의 (m)항에 따른 추가 이의 제기를 요청할 경우, 12개월 분량의 Pathway Home 지급액이 이미 가구 대신 지급되지 않았다면 심리 결정이 내려진 후 본 절의 (l)항에 따라 서면 결정문이 발부될 때까지 Pathway Home 지급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f) 통지.

DSS는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이 절에서 심리를 요청한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본 절에 의거 또는 해당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에 의한 회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는 해당 Pathway Home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있는 경우)의 내용과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할 모든 서류 및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개인에게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찾고 요청하는 HRA 소유의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5영업일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는 행정 심리 사무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르거나 또는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HRA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연기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DSS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모든 관련된 중요 증거가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심리 신청자는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DSS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행정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DSS에 연락한 경우, 또는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에 DSS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DSS는 심리 신청자 또는 승인 대리인이 본 항 (1)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HRA는 해당 사건의 일정을 다시 정하게 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결정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만을 위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기록이 된다.

(l) 공청회 판결.

심리 사무관은 심리 기록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심리 결정 사안, 관련 사실,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정,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1) 결정문 사본은 각 당사자 및 그 승인 대리인(있을 경우)에게 발송된다. 결정문에는 추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해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 대한 서면 통지와 그러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HRA는 심리 사무관의 권한을 넘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또는 본 규정에 위배되는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HRA가 심리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행정 심리를 요청한 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정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사법 심사 권리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m) 추가 이의 제기.

- (1) 심리 사무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국장을 수신인으로 한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는 심리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심리 사무관의 판결이 DSS에 의해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최소 15일 이내에 DSS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해당 신청인이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기를 원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2) 국장은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HRA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3) 결정문의 사본은 해당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송되는 사법 심사 요청 권리에 대한 안내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해당 시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 (4) 본 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따라 국장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HRA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HRA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1-07 추가 조항.

(a) Pathway Home 프로그램 참여 가구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줄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된다.

(b) Pathway Home 프로그램을 위한 대기자 명단은 유지되지 않는다.

(c) HRA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스트 가족으로 이사를 허가할 수 있다.

(d) 보호소 거주자에게 잠재적인 호스트 가족을 찾을 책임이 있다.

(e) HRA로부터 Pathway Home 수당을 받는 호스트 가족은 해당 가구로부터 직접 현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하는 것을 금한다. 임대주라고 해서 Pathway Home 지급액 외 기타 현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하는 호스트 가족은 Pathway Home 지급액을 HRA에 상환해야 한다.

(f) 호스트 가족과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두 새로운 가구가 이사를 오거나, 가구 전체 또는 해당 가구의 몇몇 구성원이 해당 가구의 주거지로부터 이사를 나갈 경우 즉시 HRA에 알려야 한다.

(g) 호스트 가족이 해당 가구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올 경우, 호스트 가족은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지급액을 반납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호스트 가족 거주지로부터 이사를 나가면, HRA는 여전히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원래 가구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Pathway Home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고, 호스트 가족은 초과 지급액을 반납해야 한다.

(h) 모든 호스트 가족은 안전 및 거주 가능 여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1) 해당 가구에 18세 이하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스트 가족은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호스트 가족의 구성원이 뉴욕 교정법 제6-C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호스트 가족에 18세 이하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호스트 가족의 구성원이 뉴욕 교정법 제6-C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i)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편 452.9조에 의거, 가구 구성원이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호스트 가족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j) 본 장에 따라 Pathway Home 지급액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의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CHARTER §1043(d)

규정 제목: Pathway Home 신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조 번호: 2018 HRA 007 (Pathway Home)

규정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RA)

본인은 이 담당실이 뉴욕시 법령 1043(d)절에 따라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한다:

- (i) 해당 법 조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
- (ii) 기타 해당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 (iii) 실효성과 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도출한다.
- (iv) 실효성과 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규정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s/ STEVEN GOULDEN
법률 자문 대행

날짜: 2018년 7월 11일

뉴욕시 시장 행정 사무소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CERTIFICATION / ANALYSIS
PURSUANT TO CHARTER SECTION 1043(d)**

규정 제목: Pathway Home 신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조 번호: HRA-20

규정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RA)

본인은 뉴욕시 법령 1043(d)절의 요건에 따라, 상기 기술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분석했으며, 상기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음을 증명한다.

- (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 (i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iii) 본 개정 공고된 규정은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s/ ALEXANDRA OZOLS
시장 운영 담당실

2018년 7월 12일
날짜